

# KLPGA 대의원 선출 관리 규정

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(제정 근거 및 목적)**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(이하 “협회” 라 한다) 정관 제20조의 2 (대의원 선출방법 및 임기) ⑤에 근거하여 제정되며, 대의원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 범위)**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따른다.

**제3조(용어의 정의)**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대의원 후보자라 함은 대의원으로 선출될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.
2. 대의원 투표자라 함은 대의원을 선출할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.

## 제 2 장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· 자격 · 임기 및 업무

**제4조(선거관리위원회 구성, 자격 및 임기)**

1. 본 위원회는 정관 제6장(위원회), 제32조(위원회의 설치), 제33조(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)에 의거하여 구성한다.
2. 협회는 대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최소 10일 이전까지 대의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
3. 선거관리위원회는 총 3인(위원장 1인, 위원 2인)으로 구성한다.
4. 선거관리위원회(위원장, 위원)는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회장이 위촉한다.
5. 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대의원 선거가 최종 종료되는 일까지로 한다.  
단, 재 선거나 추가 선거를 실시할 경우 또는 선거 운동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심의할 경우 해당 업무가 종료될 때까지로 연장한다.
6. 본 위원회에 원활한 업무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선거관리담당 부서장으로 한다.

**제5조(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)**

1.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.
  - 가. 대의원 선거 공고
  - 나. 대의원 후보자 및 투표자 명부의 확정
  - 다. 선거 관련 사무, 투표 및 대의원 선출 등 제반 사항에 관한 업무
  - 라. 선거 지침에 관한 업무
  - 마. 부정 선거 운동 감시, 조사 및 단속에 관한 업무
  - 바. 기타 선거 업무 제반 사항에 관한 업무

## 제 3 장 선거운영

### 제6조(선거운동 금지사항)

1. 선거 운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한다. 선거 운동 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, 선거관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선거운동 금지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정되면 그 자격은 상실된다.
  - 가. 회원 간 금전, 물품 등의 제공을 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 또는 약속하는 행위
  - 나. 회원 간 인신공격 등 중상비방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주동, 참여하는 행위
  - 다. 선거와 관련하여 회원 친목 단체 등에 기부하거나 약속하는 행위
  - 라.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
  - 마. 선거관리위원 및 협회 임직원은 특정인을 지지, 옹호, 격려하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.
  - 바.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

### 제7조(대의원의 임기 및 선출 인원)

1.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
2. 대의원의 선출 인원은 정회원 총수의 5분의 1을 넘지 못하며, 70명을 선출한다.  
단, 2027년 대의원 선출 시부터는 80명을 선출한다.

### 제8조(대의원 후보자)

1. 대의원 후보자는 정회원 자격 취득 후 만 3년 이상 된 자
2. 연 1회 이상 총회 참석이 가능한 자
3. 다음 각 호의 자는 대의원 후보자 자격을 제한한다.
  - 가. 협회 또는 한국여자프로골프투어 주식회사(이하 “투어” 라 한다) 임원으로 재직 중인 자
  - 나. 대의원 연임자(연속으로 2회)
  - 다. 대의원 후보자 포기각서를 제출한 자
  - 라. 해외 거주자(단, 해외 거주 사실이 확인된 자에 한함)
  - 마. 협회 회비를 미납한 자
  - 바. 협회 상벌분과위원회 규정에 의해 징계(출장정지, 자격정지) 중이거나, 징계(출장정지, 자격정지) 종료 후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

### 제9조(대의원 투표자)

1. 대의원 투표자는 대의원 선출 시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
2. 다음 각 호의 자는 대의원 투표자 자격을 제한한다.
  - 가. 협회 회비를 미납한 자
  - 나. 협회 상벌분과위원회 규정에 의해 징계(출장정지, 자격정지) 중인 자

### 제10조(대의원 후보자/투표자 확정 및 선출 기한)

1. 대의원 후보자/투표자 확정은 정기총회 개최 60일 이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.
2. 정기총회 30일 전까지 대의원을 선출해야 한다.

### 제11조(대의원 선출 방법 및 확정 원칙)

1. 대의원 선출은 현장 투표 또는 온라인 투표로 한다. 단, 투표 시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1인 1투표의 직접 선거로 진행한다.
  2. 대의원 선출은 5명 이상의 정회원의 득표를 받은 자 중에서 다득표 순으로 대의원을 선출한다.
  3. 5명 이상의 정회원 득표를 받은 대의원 후보자 중, 최종 순위자가 동표일 경우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.
    - 가. 회원 중 관례를 존중하여 회원번호 끝자리로 확정한다.
    - 나. 회원번호 끝자리는 대의원 선출 시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적용한다.
      - 1) 회원번호 끝자리는 매 대의원 선출 시 : 1, 6 / 2, 7 / 3, 8 / 4, 9 / 5, 0 / 6, 1 / 7, 2 / 8, 3 / 9, 4 / 0, 5 순으로 한다.

단, 2024년도 대의원 선출 시는 회원 번호 끝자리 9, 4로 한다.
      - 2) 상기 1)목으로 최종 순위자가 확정되지 못할 경우 회원번호 순으로 결정 한다.
  4. 대의원 선출 인원이 결원일 경우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.
    - 가. 추가 선거 기간을 설정하여 결원된 대의원 선출 인원을 충원한다.
    - 나. 추가 선거 기간의 대의원 후보자는 다음과 같이 확정한다.
      - 1) 1표 이상 획득한 자
      - 2) 회원번호 끝자리에 해당되는 대의원 후보자
        - 가) 회원번호 끝자리는 다음과 같다.

- 1, 6 / 2, 7 / 3, 8 / 4, 9 / 5, 0 / 6, 1 / 7, 2 / 8, 3 / 9, 4 / 0, 5순으로 대의원 후보자를 결정한다.

단, 2024년도 대의원 선출 시는 회원번호 끝자리 9, 4로 한다.
  - 다. 추가 선거 기간의 득표는 0표에서 시작한다. 단, 1차 선거 기간의 득표는 승계되지 않는다.
5. 추가 선거 기간 동안 5표 이상을 획득한 대의원 후보자가 결원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상기 3항 가, 나 호의 기준으로 선출한다.
6. 추가 선거 기간 안에 결원 인원이 선출되지 않는 경우, 추가 선출 기간 안에 선출된 대의원 수를 최종 인원으로 확정한다.

## 제 4 장 보 칙

### 제12조(기타사항)

1. 대의원 선출은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다. 단, 연속으로 총 2회까지만 가능
2. 협회 정관 제22조(총회의 의결 정족수) 제3항에 의거,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 자신의 의결권을 타 대의원에게 위임할 수 없다.
3. 대의원은 KLPGA 분과위원회(위원장, 위원 등)를 겸직할 수 없다.

**제13조(규정개정)**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한다.

**제14조(일반사항)**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협회 정관과 규정을 준용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규정은 2023년 11월 08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3. 11. 08. 제정)

본 규정은 2023년 11월 08일부터 시행한다.